

2015.6.29

## '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' 일부 개정 안내

### 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#### ● 개정이유

-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6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조항 신설(15.2.6 시행)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
-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
- 면세물품의 교환·환불절차를 개선여 소비자 편의 제고
-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쟁력 제고
- 주의 등 행정제재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교환권별로 산정하던 것을 세관장이 공문으로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개선

#### ● 시행일자 : 15. 7. 1. (수)

### 2. 개정내용

#### 1.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등에 따른 용어 개정

- ▶ 목적 조항의 법령 약칭을 삭제하고, 용어정의 조항의 항을 호로, 호의 내용이 긴 조항을 **각목으로 개정**
- ▶ 특허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**근무일 기준으로 명확화**

2015.6.29

## 2. 국회, 법제처 등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

- ▶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매장에 **해외통관정보를 게시**하도록 운영인 의무사항에 추가(제5조)
- ▶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**특허승계시 변경신고를 삭제하고 신청시 관련자료 제출로 완화**(제12조)하고, 특허취소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선(제37조)
- ▶ 시내면세점 구매자 범위를 인터넷면세점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**환승객까지 확대**(제15조)
- ▶ 탑승권 외에 전자티켓, 예약증 등 출국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**자료의 범위를 확대**(제22조)
- ▶ 국제우체국 조직개편으로 소포창구가 없는 경우, **동일 건물내 비통관 우체국의 소포접수창구에 인도**할 수 있도록 개선(제23조)

## 3.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등

- ▶ 보세판매장 **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**(제6조)
- ▶ 관광진흥법의 "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"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**"국산품"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**(제2조, 제15조)
- ▶ **중소·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 절차** 마련(제13조)
- ▶ **통합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해외 면세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송을 허용**(제18조)
- ▶ 구매물품의 인도장소가 출국장, 출국장 인도장으로 혼재되어 있어 **인도장으로 명확하게 규정**(제22~23조, 제25조, 제28조)
- ▶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**교환·환불 절차 개선**(제28조)
- ▶ **특허의제 기간 중 면세점의 기본 기능인 판매를 허용**(제29조)
- ▶ 세관장 보고사항에 **중소·중견면세점 특허갱신 추가**(제35조)
- ▶ 주의·경고 등 행정제재시 **처벌기준 등 개선**(제37조)
- ▶ **서류 보관 기간**을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맞춰 **개정**(제39조)